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

의안번호	2681
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3. 17.
제 출 자 : 김용술 의원, 장규권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
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
및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고자 함

2. 등록단체 현황

(단위 : 천원)

1	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	대표자	김용술		
		구성의원	김용술, 고성미, 도병두, 엄샛별, 이인식, 정재동		
		설립목적	금천구를 첨단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드론 및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,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메가시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. 또한, 주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 문제 해결 연구를 수행하며, 드론 및 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한 교통·재난·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금천구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		
		연구주제	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		
		연구기간	2025. 3. ~ 2025. 12.		
		연구내용	· 스마트 행정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· 드론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 · 교통관리 및 재난 안전 실증 연구		
		소요예산	23,000	정책개발비	20,000(VAT 포함)
연구활동비	3,000				

2	금천 고령친화 연구회	대표자	장규권		
		구성의원	장규권, 고영찬, 윤영희, 정순기		
		설립목적	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금천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독거노인 정책 및 경로당 정책 등 노인복지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금천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.		
		연구주제	금천구 어르신 복지정책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		
		연구기간	2025. 3. ~ 2025. 12.		
		연구내용	· 금천구 노인복지 여건 및 현황 ·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(FGI) 등 욕구조사 · 타 자치단체 노인복지 우수사례 조사 및 현장방문 · 노인복지 관계자 및 전문가, 주민 등의 정책 제안 반영		
		소요예산	23,000	정책개발비	20,000(VAT 포함)
				연구활동비	3,000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 제1항의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- 연구단체명 :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
- 설립목적 : 금천구를 첨단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드론 및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,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메가 시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. 또한, 주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 문제 해결 연구를 수행하며, 드론 및 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한 교통·재난·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금천구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- 연구주제 :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형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
- 단체 인적사항

연번	소속 상임위원회	성명	서명	비고
1	복지건설위원회	김용술		대표자
2	행정재경위원회	고성미		
3	행정재경위원회	도병두		
4	복지건설위원회	엄섿별		
5	의장	이인식		
6	행정재경위원회	정재동		

2025년 3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김용술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연구활동 계획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 제1항의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	
연구내용		주 제	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
		목 적	금천구를 첨단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드론 및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,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메가시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. 또한, 주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 문제 해결 연구를 수행하며, 드론 및 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한 교통·재난·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금천구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연구활동기간		2025년 3월 ~ 2025년 12월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)	
연구활동비	총 액	금삼백만원(₩3,000,000)	
	산출내역	(세부내역 별첨) 자료수집비, 여비, 급식비, 회의비, 강사료, 전문가문경비 등	
기 타		정책개발비 금이천만원(₩20,000,000), 부가가치세 포함	

2025년 3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김 용 술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1. 연구단체명 : 금천고령친화연구회
2. 설립목적 :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금천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독거노인 정책 및 경로당 정책 등 노인복지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금천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.
3. 연구주제 : 금천구 어르신 복지정책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
4. 단체 인적사항

연번	소속 상임위원회	성명	서명	비고
1	복지건설위원회	장 규 권		대표자
2	복지건설위원회	고 영 찬		
3	행정재경위원회	윤 영 희		
4	행정재경위원회	정 순 기		

2025년 3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장 규 권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연구활동 계획서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 제1항의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금천고령친화연구회	
연구내용		주 제	금천구 어르신 복지정책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
		목 적	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금천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독거노인 정책 및 경로당 정책 등 노인복지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금천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.
연구활동기간		2025년 3월 ~ 2025년 12월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)	
연구활동비	총 액	금삼백만원(₩3,000,000)	
	산출내역	(세부내역 별첨) 자료수집비, 여비, 급식비, 회의비, 강사료, 전문자문경비 등	
기 타		정책개발비 금이천만원(₩20,000,000), 부가가치세 포함	

2025년 3월 일
신청인 대표자 : 장 규 권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관 계 법 령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이 조례에서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”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2. 연구단체의 활동비(이하 “연구활동비”라 한다)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.
3. “의원정책개발비”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각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,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.

③ 의원 1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.

제4조(등록)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제5조의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, 운영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,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단체의 심의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
3.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·배분·회수에 관한 사항
4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연구단체 지원 등)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.

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단체 등록취소)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3.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
4.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제11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)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공동참여)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)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4조(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)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.

부 칙(제1252호, 2022.10.15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1487호, 2024.5.2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